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5962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59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나10112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B은행(國AC銀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BA 외 7인)

【피고,상고인】 신CA기금(信CB基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C 담당변호사 최BB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7. 선고 2002나10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11,329,327원에 대한 1999. 12. 3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1.2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15조 제11호, 제16조 등의 "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금의 보증 부분이 회수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그 회수불능이 된 채권액 및 동 종속채무에 관한 보증책임이 면제된다."는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1) 주식회사 AA은행(2001. 11. 1. 주식회사 AB은행과 합병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대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건설업자운전자금대출을 하면서 그 내부적인 여신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대출금상환계획서(이하 '상환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은 것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상환방법을 상환계획서대로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상환계획이 어떠하고 그것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대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금상환에 필요한 관리를 하기 위해 제출받은 것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로서도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로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뿐 상환계획서대로 분할상환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의사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상환계획서를 제출하고 분양대금 수납계좌를 주택은행 부산 지점에 개설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분할상환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여신거래약정서의 4가지 상환방법 중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는 항목에

해당표시를 하고 그 외 특약사항란에는 별다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보증승인통지서의 상환방법란에도 '일시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약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 주택은행은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대출시 입지급통제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자운전자금대출'에는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가 주택은행 부산 지점에 개설한 분양대금 수납계좌는 소외 회사 단독명의로 보통예금이고, 주택은행이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거나 그 외 소외 회사로부터 그 수납계좌에 대하여 인출 제한 등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주택은행에게 소외 회사가 개설한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대하여 입지급통제등록이나 인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주택은행에게 그 수납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중 상환계획서에 따른 각 상환예정액 상당은 계속 예금으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을 제4호증의 2, 3(보증승인신청서, 신용조사서, 원심판결의 '갑 제4호증의 2, 3'은 오기이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 및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1998. 6. 10. 주택은행으로부터 특별자금 용도로 49억 3,3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으나, 이 사건 대출계약이 분할상환이 아닌 일시상환약정으로 체결되었고, 소외 회사가 1999. 12. 30.까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주택은행에게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인출을 제한하거나 이를 예금으로 계속 보관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후 소외 회사가 그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추가대출을 받았다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택은행에게 대출금 회수불능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이 "이 사건과

같은 상환계획서를 징구하고 분양대금 수납계좌를 주택은행에 개설하게 한 사례는 많으나, 그 중 상환계획서대로 상환받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계약법 또는 보증책임을 면책시킬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등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약정이율을 연 11.25%로 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그 약정이율인 연 11.2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11,329,327원에 대한 1999. 12. 3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1.2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